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발간사	사법감시지 재발행을 위한 후원, 2010년에 할 수 있는 가장 뜻있는 일	01
이슈1	<u>3승 4패, 물불가리지 않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u>	03
	전기통신기본법(허위통신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 사례	
이슈2	<u>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텐데</u>	15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 3주년] 징계사례 460건 분석	
이슈3	<u>2년 전 조사 때와 달라지 않은 부끄러운 법률가 집단</u>	27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2008~2010년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자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6여년 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조직에 국민들이 당당한 주체로 서고 국민 스스로 사법권력의 주인이자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논쟁 속에서만 존재해 온 사법개혁을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한 사법개혁으로 일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조3륜'이라 일컫는 법원·검찰·변호사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 법조비리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에 대한 모니터 활동, 법원과 검찰 인사에 대한 시민적 차원의 비판과 의견제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중립화 방안과 법조일원화 등 사법개혁의 종합적 청사진과 정책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안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시민감시의 무풍지대였던 법조계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여 모니터 대상이 되고 있는 법률가들에게 제공하는 매체인 '사법감시'를 95년 10월부터 발행해왔습니다. 사법감시는 현재 전국의 판사와 검사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법학자 등에게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사법감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513-088742-13-101 (예금주 : 참여연대사법감시)

참여연대 회원가입 : 전화 02-723-4251 (후원부서 : 사법감시센터)

주요활동

- 사법분야 모니터 전문지 <사법감시> 및 검찰백서 발간(1995년~현재)
- 국민참여재판과 로스쿨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운동 (1995년~현재)
- 검찰 민주화 등 검찰제도 개혁운동 (1996년~현재)
- 법조비리 모니터 및 변호사징계정보제공 웹DB 운영 (1997년~현재)
- 대법관 및 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 평가 (1997년~현재)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1999년~현재)
- 시민과 함께 하는 '판결비평'시리즈 발행(2005~현재)

등록일	2003. 1. 6.
등록번호	서울 바 03279
발행일	2010. 11. 29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행인	임종대
편집인	하태훈
연락처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사법감시誌 재발행을 위한 후원, 2010년에 할 수 있는 가장 뜻있는 일”



2006년 이후 발행이 중단된 〈사법감시〉 재발행을 위한 후원행사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시민단체 후원도 뜻있는 일이지만 〈사법감시〉의 재발행 역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법 권력의 건전한 감시자 〈사법감시〉를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로부터 그동안 사법감시의 실천력이 약화되고 〈사법감시〉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5월의 후원행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법감시〉의 역사를 잇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사법감시〉의 역사를 탄탄하게 할 벽돌로 쌓였습니다. 2010년 3월, 〈사법감시〉 제29호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 검찰'을 시작으로 재발행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아니었다면 제30호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법관의 변호사 진출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정보를 알 수 없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선택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의뢰인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행사를 파헤쳤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를 무기로 과잉범죄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시민의 건전한 비판도 숨죽이게 되었습니다. 고위법관들이 퇴임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최종 근무지에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변호사의 비윤리적 수임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이는 2년 전의 조사와 다를 바 없어 제도화를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같이 법조삼륜에 대한 모니터의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사법감시〉에 한데 모았습니다.

이렇듯 권력에 의한 사법감시의 사각지대를 시민에 의한 사법감시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부릅뜬 수많은 시민의 눈으로 사방을 둘러 살펴 국민주권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법조비리와 부패, 부조리와 권한남용의 실상을 알리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며 개혁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중단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사법감시〉의 재발행을 통해 다짐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쉽 없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2010년 11월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ISSUE 1

**3승 4패, 물불가리지 않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 사례

- 검찰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적용실태, 왜 문제인가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적용 현황
-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 vs 법원의 판단
-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에도 허위통신죄 적용 남발하는 검찰과 경찰
- [참고]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원 및 위헌성 논란



검찰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통신죄¹) 적용실태, 왜 문제인가

'허위통신죄' 신설 이후 45년간 적용된 적 없었다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임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조항은 1961년 전기통신법상에 신설²되었고, 형량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 구성요건은 현재까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법 적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에야 처음으로 이 조항을 통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졌음

공권력 행사나 정부정책 등 정부활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적용된 사례가 많아

특히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들은 대부분 촛불집회나 천안함 침몰처럼, 정부의 활동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엇갈린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음

현재(2010. 8.말)까지 이 조항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1심 판결이 선고된 7건의 사건 중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 대하여 일어난 촛불집회와 관련된 내용이 5건임. 그 외의 사건도 '미네르바 사건'이나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물에 대한 것으로 정부정책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주장 등을 담고 있음

검찰은 이 조항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조항이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다가 현대적 수단인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에 적용하려 하는 점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점(현재 위헌소원 심리 중이며 국가인권위가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법 적용은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항으로 기소되어 최근(2010년 8월)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총 7건의 사건 중 4건이 법원에 의 해 무죄판결이 남(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건 포함). 나머지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들도 현재 위헌소원 심리중 이거나 기일추정된 상태임

최근에도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통신행위에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고, 이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가운데 검찰은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는 등³, 검찰의 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음

1 이 조항을 두고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허위통신죄'로 명명하고자 함. 법 조문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현재 심리 중인 위헌소원에서도 '허위의 통신' 개념의 모호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위사실유포죄'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임(다음을 참고)

* 김갑배 변호사, 미네르바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의견서 (원문) http://www.hani.co.kr/arti/ociety/society_general/343518.html

* 이정훈,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혁 및 의미」 (2009)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p.246

“전기통신기본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제목의 벌칙은 존재하지 않고 제47조에서 '허위통신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의 '허위통신죄'를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는 1983년에 법률 제정과 함께 신설되었고, 현행조항은 1996년 개정된 것임

3 경향신문 2010.6.23자 보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10명 기소」 참고, 기사 내용에 따르면 23일 검찰(서울중앙지검 천안법보수사2부(부장 위재천))은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7명을 약식기소, 1명을 군검찰 이송했다고 밝힘

검찰기소, 이것이 문제다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른 견해를 취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벌법규로 처벌하고자 하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자유롭고 건전한 비판기능마저 상실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4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피고자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비교해 보았음

그 결과,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나 제안 등까지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했거나 △'공익을 해할 목적'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단순한 개연성이나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판단으로 기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적용 현황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 중, 1심 재판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7건임(〈표 1〉참조).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두 건 역시 정부정책 또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됨

재판결과를 보면, 유·무죄 비율이 4:3(무죄:유죄)로 무죄가 더 많음(〈표 1〉참조). 무죄사건 중 1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 유죄판결 중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없으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은 현재 위헌소원 심리중(2008헌바157)에 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건 모두 기일추정중임

〈표 1〉 유·무죄 사건별 재판결과

	무죄	유죄
3심 판결	1	0
2심 판결	1	1
1심 판결	2	2
총 사건	4	3

〈표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적용 현황

사건번호 (공소장 접수일)	공소사실	담당부서 및 주임검사	재판결과
서울중앙지검 2008형제65768 (2008.6.20)	"시위참가 여성을 경찰이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합차로 빼돌렸다" 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림	첨단범죄수사부 (부장 구분진) 조영석	1심 유죄(징역10월), 2008.12.12선고 ⁴ 2심 기일추정
서울중앙지검 2008형제74829 (2008.7.10)	"경찰들이 시위대를 강간하고,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	첨단범죄수사부 (부장 구분진) 임윤수	1심 유죄(징역10월 집유2년 사회봉사 160시간), 2008.10.22선고 ⁵ 2심 유죄(징역10월 집유2년 사회봉사 80시간), 2008.11.12선고 ⁶ 위헌소원 심리중

서울중앙지검 2008형제69017 (2008.7.16)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휴교시위, 문자를 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냄	형사4부 (부장 조은석) 강종현	1심 무죄, 2008.9.19선고 ⁷ 2심 무죄, 2008.11.19선고 ⁸ 3심 무죄, 2010.9.9선고 ⁹
서울중앙지검 2008형제77317 (2008.7.16)	전경을 사칭하여, “경찰 상부에서 전경들에게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경들은 시위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였다” 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	첨단범죄수사부 (부장 구본진) 차순길	1심 유죄(벌금7백만원), 2008.12.30선고 ¹⁰ 2심 기일추정
서울중앙지검 2008형제98673 (2008.12.30)	시위참가 여성 사망설에 관한 글을 본 후 내용을 편집하여 인터넷에 올림	공안2부 (부장 이영만) 이현주	1심 무죄, 2009.2.18선고 ¹¹ 2심 기일추정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4050 (2009.1.22)	미네르바 사건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에산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글을 작성 △정부가 주요은행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림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 김주선) 오현철	1심 무죄, 2009.4.20선고 ¹² 2심 기일미지정 위헌소원 심리중
서울남부지검 2009형제76145 (2010.1.5)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편집해 “내가 미사일 한방 쏘서 북풍 불어주면 좋겠지?” “그럼 나야 고맙지” 등의 말풍선을 달아 인터넷에 올림	형사4부(부장 강신엽) 김성태	1심 무죄, 2010.5.27선고 ¹³ 2심 무죄, 2010.8.19선고 ¹⁴ 3심 기일미지정

주 : 위 7건은 법원도서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2010.8.말 현재)한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만 포함되었으며 검찰의 공소제기 후 1심 판결 이전의 사건들은 제외되었음

- 4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3294,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
- 5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3896,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
- 6 서울중앙지법 2008노3806, 형사항소4부(나) 최정열(재판장), 송방아, 이동희 판사
- 7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4014,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
- 8 서울중앙지법 2008노3335, 형사항소8부(나) 노태악(재판장), 이효선, 이혜성 판사
- 9 대법원 2008도11210, 1부(다) 민일영(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대법관
- 10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3989, 형사7단독 박제영 판사
- 11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8185,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
- 12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04,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 13 서울남부지법 2010고단10, 형사5단독 한정훈 판사
- 14 서울남부지법 2010노975, 제1형사부(다) 손왕석(재판장), 김기수, 강윤희 판사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 vs. 법원의 판단

앞서 살펴 본 사건 중 총 4건의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음(〈표 3〉 참조). 비교방법은 판결문에 드러난 검찰의 공소요지와 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음

검찰 주장의 문제점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개인적 의견표명을 사실의 적시라 판단하여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부 정책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하여 '공익'의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비교

사건	검찰의 주장		법원의 판단	
	허위의 사실	공익을 해할 목적	허위의 사실	공익을 해할 목적
단체휴교령 문자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휴교시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허위 통신에 해당	전국의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등교거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해할 목적	휴교시위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중고등학생들도 촛불집회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의 표명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도덕적 비난가능성 문제. 엄격히 해석해야 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익을 해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여대생사망설 2차 유포	최초 게시자가 허위로 쓴 글에 대해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사망설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글과 사진을 게시	(특별한 언급 없음)	기존 인터넷에 있던 사진 등을 조작하거나 합성한 바 없고, 그에 대한 자신의 주관에 반영된 이해·평가·추측 등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 글 게시 당시까지 여대생사망설에 대한 객관적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쓴 것으로, 만일 표현 당시 진실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외부로 전달해야 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억압하는 것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가기관 및 그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이를 통하여 확보되는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을 손상시키려 했다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사람들에게 여대생 사망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
미네르바	①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 ②정부가 주요 은행등에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발송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	정부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외환정책 및 대외 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 경제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공익을 해할 목적	①, ②의 사실은 인정됨	실제 외환보유고 감소나 정부의 달러매수 자체요청이 있었고, 피고인이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일부 과장,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고는 하나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썼다고 보기 어려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명박대통령 패러디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없다 해도 글의 전체 취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와 내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므로 허위사실에 해당	(특별한 언급 없음)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개인적 의견 표명. 희화적 묘사나 풍자를 속성으로 하는 패러디물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임	(특별한 언급 없음)

검찰의 무리한 해석① : 의견표명이나 제안 등을 '허위의 사실'의 적시라 본 경우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구성요건으로서 '허위의 통신'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 본 무죄사건의 중 다수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검찰의 공소에 대해, 법원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나 제안·촉구"로 판단하였음

법원은 '허위'에 대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밝혀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사실'적 개념"으로 "의견표명이나 제안, 촉구 등과 구별"된다고 보고 있음. 또한 법원은 이러한 의견의 표명은 "비록 가치 있거나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위 4건 중 법원에 의해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개인적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된 것은 3건으로 △단체 휴교령 문자 △여대생 사망설 2차 유포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사진임. 이 사건에 있어 검찰은 '사실의 적시'를 무리하게 주장하여, 표현의 객관적 내용이나 통상적 의미, 배경이 되는 상황이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사례 1) '단체 휴교령 문자' 사건

○ 사실관계

이 사건 기소가 된 사실은 "학생시위 -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보낸 부분임

○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문자가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아니한 학생들로서는 충분히 이 메시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점, 문자메시지에 함축적인 문구가 많이 사용된다는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는 2008. 5. 17.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휴교시위를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통신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그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맥, 그리고 기재 내용의 전달수단이 단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불과한 점, 그 문구에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인식을 형성

할 만한 구체적인 출처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전혀 적시되지 아니하였던 점, 더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이른바 '촛불집회'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차 2008. 5. 17. 휴교시위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2008. 5. 17.을 기점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촛불집회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서울중앙지법 2008. 9. 19. 선고, 2008고단4014판결)이라고 판단하였음

■ 사례 2) 여대생 사망설 2차 유포

○ 사실관계

이 사건 기소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촛불집회 여성참가자 사망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을 연결해 다시 올리면서 '경찰이 실신한 듯, 축 치진 여성 어깨에 걸쳐 메고 버스에서 나옴' '1시 32분 31초, 사망설 해당자 물대포차와 버스 사이로 운반 중' '1시 40분 승합차에 싣고 있다, 그런데 마치 관 같은 저것!!' 등 각각의 사진에 대한 설명을 달아 글을 올린 것임

○ 검찰의 주장

검찰은, 당시 경찰관들에 의해 여성 시위참가자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초 사망설을 제기한 자가 허위로 편집한 사진과 글을 본 후, 사실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편집한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에 대해 "원본자료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합성한 바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각 화면마다 그 안에 나타난 피사체들 중 특정 부분을 지적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눈으로는 어떤 장면으로 보이는지를 자막의 형식을 빌어 설명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접하는 일반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각 화면에서 지적한 부분과 그 설명을 대조, 검토해 보면 누구나 나름대로 피고인의 글이 설득력이 있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적절한 검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관이 반영된 이해, 평가, 추측 등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또한 법원은 이와 같은 개인적 의견이 "비록 가치있고 올바른 견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과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서울중앙지법 2009. 2. 18.선고, 2008고단8185 판결)

■ 사례 3) 이명박 대통령 패러디 사건

○ 사실관계

이 사건 기소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합성사진에, 김 위원장은 "내가 도와주까? 내가 미사일 한방 쏘서 북풍 불어주면 좋겠지?"라는 말풍선과 이 대통령은 "그럼 나야 고맙지 여기저기서 빨갱이 때려죽이자고 쫓기대회 하고 그러다 보면 정책 반대해도 빨갱이로 몰기도 쉽고"라는 말풍선을 추가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임

○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에 대해 "위 글의 내용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명박 정부와 북한이 내통해 일으킨 것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게재한 허위의 사실"이라 주장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진의 형식이나 대화 내용 중에, 위와 같은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각이나 장소, 대화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들어 있지 않고, 일반인 누구라도 위 사진이 실제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합성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인 점, 나머지 글의 내용을 살펴보다도, 위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는 인식을 형성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서울남부지법 2010. 5. 27. 선고, 2010고단10판결)이라고 판단함

특히 2심 판결은, 이 사건 게시물을 '패러디물'로 판단하면서, '패러디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은 용인"되어야 하고, 해당 게시물이 "패러디물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다양한 의견 교환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하의 표현의 자유영역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2010. 8. 19. 선고, 2010노975판결)고 판시했음

검찰의 무리한 해석② :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근거없는 단정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이 조항 구성요건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위헌소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원들 역시 '공익'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특히 형법상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작용하는 데 비해, 이 조항에서는 구성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됨

그러나 무죄사건들에 있어서 검찰의 주장을 보면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단순한 개연성이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법원은 개념을 오해하고 글을 쓰거나, 그 당시에는 객관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다가 나중에 허위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해서 이를 바로 행위자가 '허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이러한 '고의'가 없는 이상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검찰이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통해 무리한 기소를 한 사례는 다음 3건임. △미네르바 사건 △단체휴교령 문자 △여대생사망설 2차 유포

■ 사례 1) '미네르바' 사건

○ 사실관계

피고인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약 280편의 경제분석 글을 올려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었음.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은 두 가지로, ① 외화에 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데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정부의 외환보유고 부족이 원인이 되었다는 글과 ②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 금지 긴급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글이었음

○ 검찰의 주장

검찰은 미네르바 사건에서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글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중요한 경제적 개념들을 오해한 상태에서 인터넷상의 자료와 자신의 경제적 지식 등을 덧붙여 글을 쓴 사실이 인정되고,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비록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 또한 피고인이 쓴 글이 실제 경제에 미친 영향(달러 매수량 증가)을 개량화하거나 단정할 수도 없는데, 이러한 점들만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 선고, 2009고단304 판결)

■ 사례 2) '단체휴교령 문자' 사건

○ 검찰의 주장

피고인이 보낸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시 20여명의 중고등 학생에게 문자를 돌렸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전국의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등교 거부에 이르게 하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이○○ 외 위 2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각 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의 '공익'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요구함.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여 단순히 과장되거나 주관적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에게 의해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형법법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국민의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함

법원은 "비록 학업에 정진하여야 할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형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의 문제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는 명백히 구분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서울중앙지법 2008. 9. 19. 선고, 2008고단4014판결)

■ 사례 3) 여대생 사망설 2차 유포

○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고의여부를 해석하면서, 허위의 사실(여대생 사망설)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사망설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여,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사실(나중에 허위로 판명됨)에 대한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의견개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스스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판단함¹⁵.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내심 여대생 사망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단정적이지 않은 이상 나중에 그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다고 해서 이같은 행위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인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만일 표현 당시에 진실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고, 후에 허위라고 판명된 사실에 관하여 동조하거나 지지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가 항상 금지되거나 제재를 받는다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표현의사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힘

15 서울중앙지법 2009. 2. 18. 선고, 2008고단8185판결.

"피고인이 진정으로 의욕한 바는 경찰관이 촛불 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사망케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국가기관 및 그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이를 통하여 확보되는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을 손상시키려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접하는 사람들 스스로 여성 시위참가자 사망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것"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에도 허위통신죄 적용 남발하는 검찰과 경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에 있어, 총 7건 중 5건이 2008년 발생한 촛불집회와 관련한 내용이었음. 이후 미네르바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이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재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기일을 추정해 놓은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2010년 천안함 사고 이후, 다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인터넷에 글을 쓴 사람들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고 있음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의혹이 제기되었음. 정부·국방부가 사고시점이나 원인,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는 데 따른 의혹은 언론보도·정치권·학계·시민사회를 망라해 수차례 제기되었음. 이 과정에서 검찰·경찰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른 내용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수사하거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기도 함

현재(2010년 8월 말 기준)까지 천안함 관련 내용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경찰·검찰의 수사나 기소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살피기는 어려움. 아래 사례는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사찰, 공권력남용 피해사례 발표회>(2010. 9. 28)를 통해 비교적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 중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사례를 정리한 것임. 대부분 경찰수사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발부에 관하여 검찰이 지휘한 사건이 포함됨

〈표 4〉 천안함 침몰 관련 전기통신기본법위반 경찰수사사건

사건	혐의사실	적용법조	경찰수사
천안함 핵잠수함 충돌설	천안함 사고 이후 국방부가 사고 시간·위치·상황 등에 대해 발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 보도기사·사진·영상, 온라인 자료 등을 근거로 사고의 원인을 추론하는 내용의 글을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올림. 천안함 인양 이후 공개된 자료와 미국 핵잠수함 하와이호 수리 사진 등을 근거로 4/21 이후에는 '핵잠충돌설'을 주로 언급함	전기통신기본법위반	5/27 1차 경찰소환조사* 이메일 및 통신기록 압수수색 집행통지 받음 (내사사건)6/22 2차 경찰소환조사(피의자 신분)
천안함 패러디동영상 2차 게시	유튜브에 올라온 천안함 패러디동영상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림. 문제가 된 동영상은 네티즌 진상조사단이 은폐된 TOD영상을 복원했다는 제목으로, 만화형식으로 천안함 침몰이 미국 잠수함 충돌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 TOD영상, 천안함 교신기록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임	전기통신기본법위반	8/16 체포영장 제시 후 연행
천안함 분석글 게시	공개된 어뢰 사진에서 스크루가 닳아 있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합조단 관계자에 직접 문의한 내용과 답변을 함께 공개함	전기통신기본법위반	6/7 참고인 조사(피내사자 신분)

주 : 위의 사례는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사찰, 공권력남용 피해사례 발표회>(2010. 9. 28,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된 사례 7건 중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사례 3건을 정리한 것임. 따라서 혐의사실 내용 등은 실제 경찰의 조사와 다를 수 있음

검찰은 천안함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 11명을 입건해 3명을 불구속기소, 7명은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군인 1명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음(2010. 6. 2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

경찰이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조사를 벌인 대상은 전국적으로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2010. 5.말), 검찰은 조사 대상자 중 나이가 어리거나 사안이 경미한 30여명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음

천안함 관련 표현·통신행위에 대한 검·경의 허위통신죄의 적용은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이기는 하나, 수사나 단속만으로도 위축효과를 가져와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토론을 가로막고 있음.이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 중 절반 이상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서라도 검찰은 이 조항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조항을 적용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례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

[참고]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원 및 위헌성 논란

지금까지 살펴봤던 현행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죄에 대한 처벌조항임. 이 조항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전기통신법상에 존재하였음. 해방 이후 모든 법률이 일제가 남긴 그대로 존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법 역시 (의용) 전신법과 (의용) 무선전신법이 잠정적으로 효력이 지속되고 있었음. 1961년 제정된 전기통신법 역시 이 내용을 종합한 것이었고, 허위통신죄 역시 (의용) 전신법과 (의용) 무선전신법의 조항들을 합쳐 놓은 것이었음¹. 전후인 1950년 이후 일본은 법 개정을 통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그대로 남아있음²

1983년 전기통신법이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나뉘면서 허위통신죄 조항은 그 이후로 계속 전기통신기본법에 속함.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의 기본적 관리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은 2건이 현재에서 심리 중임. 미네르바 사건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임. 현재 위헌소원 중인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이 현재 결정 이후로 기일이 추정된 상태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1건(‘단체 휴교령 문자’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표 5〉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원 및 위헌성 논란에 관한 일지

날짜	주요내용	비고
1961.12.30	전기통신법 제정 제89조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정취지 공중전기통신 및 사설유선전기통신의 관리·운영·설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의 공평과 역무의 적정 및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1983.12.30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제39조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정취지 전기통신의 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 등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의 기본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서비스 이용관계를 규정하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996.12.30	현행조항으로 개정 제47조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항 개정이유는 따로 언급이 없음)
2008.6.20	허위통신죄 적용 첫 기소(공소장 제출)	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에 관한 글
2008.12.23	현재, 위헌소원 심판회부(2008헌바157)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
2009.1.28	미네르바 사건 변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허위의 통신' '공익'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반 등
2009.4.20	법원, 미네르바 사건 무죄선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 요지 "허위의 통신이라는 구성요건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공익을 해할 목적'을 규정한 만큼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009.5.26	현재, 미네르바 사건 위헌소원 심판회부(2009헌바88)	
2009.7.1	인권위, 위헌의견 현재·서울중앙지법 제출	'공익' '허위의 통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이라는 표현의 자유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2009.12.10	현재, 위헌소원 공개변론	
현재	현재, 심리중	

1 이정훈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혁 및 의미」 (2009)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pp.247~249

2 이정훈, 위의 논문 p.257~258. 이정훈은 우리나라가 이 조항을 존치시킨 이유에 대해 1961년 당시 "불안정한 정치변동시기에 공공질서의 안정과 치안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불온한 선전 선동행위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추측하고 있음

ISSUE 2

**“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 3주년]
징계사례 460건 분석

- 징계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와 한국 실태
-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DB 수록 460건 분석



징계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와 한국 실태

"그 때 A회사는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 사례는 2003년에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던 A회사가 입은 실제 사례를 가공한 것이다.

2003년 A회사는 전기요금청구사건 소송을 박 모 변호사(1956년생, 서울)에게 맡겼다. 그러나 A회사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박 모 변호사에게 항소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 모 변호사도 그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박 모 변호사는 법률에서 정한 항소기한을 넘겨버렸다. A회사로서는 항소심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쳐 버린 것이다(이 일로 박 모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만약 A회사가 박 모 변호사가 몇 년 전에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아 변호사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과연 박 모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맡겼을까? 박 모 변호사로부터 상상도 못했을 피해를 입었을까?

박 모 변호사는 1998년 12월에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고 착수금 500만원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석 달이 넘도록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소송위임을 취소하고 착수금을 돌려주기로 의뢰인과 약속한 뒤에도 2000년 10월이 될 때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박 모 변호사는 또 1998년 말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한테서 추정금 예납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실제 법원에 납부한 830여만 원을 제외한 17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김 모씨의 요청을 수 차례 묵살하고 1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박 모 변호사는 2000년 10월에 징계(과태료 200만원)를 받았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성실한 변호사를 찾고 싶었던 A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고, 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황당한 피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서 시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그 변호사가 어떤 나쁜 일에 연루된 적이 있는 변호사인지, 아니 공식적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인지 불안해하면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이런 현실,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일본의 사례 - 일본 도쿄사법서사회

변호사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법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법서사'가 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직업윤리를 위반했거나 위법행위 등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변호사들처럼 징계처분(계고(戒告),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업무금지 세 종류가 있다)을 받는다.

그런데, 도쿄사법서사회의 웹사이트 (<http://www.tokyokai.or.jp>)에 가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법서사가 2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

다음 그림은 도쿄사법서사회의 웹사이트의 '사법서사(회원) 정보' 페이지에 있는 검색창에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법서사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본 결과 화면이다.

■ 懲戒・注意勧告

東京司法書士会懲戒処分等の公表

平成16年5月21日開催の東京司法書士会定時総会において「東京司法書士会懲戒処分等の公表に関する規則」が制定され、同日施行されました。

■ 東京司法書士会懲戒処分等の公表に関する規則

この規則に基づき、以下のとおり公表します。

※フルネームで検索を行う場合は、名字と名前の間に全角スペースを入れて下さい。
※フリガナは、全角カタカナで入力下さい。

名称：

フリガナ：

条件を入力し、検索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

이 사법서사의 경우 2009년에 징계(1주일 업무정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징계의 자세한 내용(징계사유 등)은 검색결과 화면 맨 아래 좌측의 PDF 파일을 내려받아서 볼 수 있다.

1 <http://www.tokyokai.or.jp/tokyokai/member.php#discipline>

■ 징계정보 공개의 목적은?

"국민 권리 보호, 국민 신뢰 확보"

도쿄 사법서사회가 이처럼 사법서사들에 대한 징계정보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도쿄사법서사회 징계처분 등의 공표에 관한 규칙(東京司法書士懲戒処分等の公表に関する規則)' 제1조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목적) 제1조

이 규칙은, 도쿄사법서사회(이하 '본회'라 함)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서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본회 회원에 관한 징계처분과 주의권고 등을 공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나아가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

한편 위 '규칙'에서 정한 공표(징계정보의 공개)의 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공표 방법) 제6조

회장은, 법무국장으로부터 본회 회원에 관한 징계처분 통지를 받거나, 혹은 전조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신속하게 본회 게시판에 게시하는 이외에, 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한다.³

(공표 기간) 제7조

제2조의 공표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47조 제2호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일로부터, 업무정지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2년
- (2) 법 제47조 제3호(사법서사에 대한 업무금지)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사법서사법인에 대한 해산) 처분일로부터 5년⁴

미국의 사례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2 第1「この規則は、東京司法書士「(以下、「本」_レと_レいう。)が「民」の「利」を保護し、司法書士制度に「する」_レ民の信「を」確保するため、本「の」_レ員に「する」懲戒「分」及び注意「告」等を公表するための基準を定め、も_って運用の適正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3 (公表の方法) 第6「本」_レ長は、法務局長より本「の」_レ員に「する」懲戒「分」の通知を受け、又は、前「の」_レ理事「の」承認を得た後、速やかに、本「の」_レ示場に「示」_スるほか、本「が」_レ運「ス」るインターネット上のホームページに「載」_シて公表する。

4 (公表の期間) 第7「第2」_レの公表の期間は、次のとおりとする。

- (1) 法第47「第2」_レ及び法第48「第1」_レ項第2「_レ、同」_レ第2項第2「_レ業務停止の日から、業務停止期間終了の翌日から2年
- (2) 法第47「第3」_レ及び法第48「第1」_レ項第3「_レ」_レ分の日から5年

참여연대가 4년 전(2006년 7월)에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 이슈리포트를 발표하면서 확인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웹사이트(<http://www.calbar.ca.gov>)에 가면 지금도 자신이 찾고 있는 변호사가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찾기' 페이지에서는 한국의 경우처럼 단순히 변호사 연락처나 출신 학교 등만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8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 1) 이름, 2) 변호사자격번호, 3) 연락처, 4) 졸업한 로스쿨, 5) 변호사활동유지 여부, 6) 전문분야(공인된 경우), 7) 징계 내역, 8) sections membership

아래 화면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찾기' 검색 화면과 특정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 화면 중 징계와 관련한 부분이다.

ATTORNEY SEARCH

Enter Attorney Name or Bar Number

☐ Include similarly sounding names

Can't find an attorney? Try [Advanced Attorney Search](#).

Status History 자격변동 내역

Effective Date	Status Change
Present	Active
1/12/2000	Active
10/10/1997	Not Eligible To Practice Law
12/15/1975	Admitted To The State Bar of California

[Explanation of member status](#)

Actions Affecting Eligibility to Practice Law 변호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들

Effective Date	Description	Case Number	Resulting Status
Disciplinary and Related Actions 징계 및 관련 처분들			
10/10/1997	Discipline w/actual suspension	96-C-05285	Not Eligible To Practice Law
10/10/1997	Interim suspension after conviction	96-C-05285	Not Eligible To Practice Law
Administrative Actions 행정적 처분들			

This member has no public record of administrative actions.

이 사례에서 검색을 해 본 변호사는 1997년에 우리나라의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2000년부터 다시 변호사활동을 재개했음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주기도 하며, 징계기록에 대한 공식적인 사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징계관련 내용 전혀 없는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http://www.koreanbar.or.kr>)

5 <http://members.calbar.ca.gov/fal/MemberSearch/QuickSearch>

를 비롯해 각 지방변호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그 어디에서도 내가 찾고 있는 변호사가 과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지도 않다.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대한변협의 공식 간행물인 월간지 '인권과 정의'에 공고하고 있다. 이는 아래의 변호사법과 변협규칙 등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공고 및 통지)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의 내용을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사례를 알기 위해서는, 1993년 이후 최근까지 발간된 대한변협의 회지(會誌)인 '인권과 정의' 수 백 권(연간 12회 발간)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그 회지를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는 곳도 거의 없다.

게다가 징계결정이 내려졌을 때, 징계사유를 '변호사 품위 손상'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공고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실제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할 공탁금이나 수입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의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의 이유로 소추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기각된 경우조차 '변호사 품위손상'이라고만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말 단순한 직업윤리 위반자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한 변호사를 시민들이 구별짓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마저 있다.

참여연대가 4년 전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실태를 비판하면서, 수차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서 더 좋은 변호사, 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선량한 변호사들을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할 것

을 요청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런 요청에 귀를 닫았다. 다만 국회 등에서 일부 지적이 있고 법무부 등에서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협회에 문의를 해오면, 선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문의하면 알려줄 수 있다'는 안내문은 대한변협 웹사이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실제 "변협에 문의했는데 잘 알려주지 않아서, 참여연대에 연락해 보게 되었다"는 일부 시민들의 전화상담 경험을 보았을 때, 변협에서 간편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정보에 대한 공개문제에 앞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다수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웹사이트(<http://www.seoul-bar.or.kr>)에는 변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어떤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 또는 직업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의 변호사징계정보 검색서비스

참여연대는 2006년,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징계내역을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한 뒤, 2007년부터 9월 말부터 참여연대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변호사 징계내역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⁶⁾를 이용한 검색결과 화면이다. 강*진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징계 받은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 화면이다.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이름입력 :

징계정보 검색 소개 | 제공하는 정보 | 도움말

강 진 에 대한 검색결과 - 상세내용보기는 이름을 클릭하세요

이름	생년	사시기수	자격번호	징계결정일
강 진	19 7	40회	6 19	2004-05-31

징계내용	과태료300만원
징계사유 요지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규칙 등 위반
징계결정일	2004-05-31
사건번호	제2003-29
징계당시 근무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 7-4 대 빌딩 503호
비고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이 '인권과 정의'에 공고하고 있는 징계결정내용과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변호사징계내역을 서비스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2010년 9월 현재 제공하는 징계정보에는 1993년부터 2010년 8월 이전까지 변협이 징계한 내역과 그중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기각 또는 인용한 경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징계 사건 수로는 460건이며, 징계 받은 변호사 수로는 411명에 이른다.

6 <http://www.peoplepower21.org/?sub=lawyer>

간혹 변협이 발표하고 있는 징계사건에 대한 통계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변협이 제공하고 있는 징계공고에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선량한 변호사와 '불량 변호사'를 구별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을 보호하고 결국 변호사들의 직업윤리 이행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단체의 태도 변화 필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도 나서야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를 선택하기에 앞서 해당 변호사가 과거 비윤리적 행위나 직업윤리 위반,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로 인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징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단체가 해당 정보를 시민들이 수월하게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

시민의 변호사 선택권, 직업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변호사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역할이다. 그리고 선량한 변호사들을 '불량 변호사'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변호사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비록 지금까지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시민들에게 변호사징계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기존의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국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변호사 직업윤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사명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DB 수록 460건 분석

참여연대는 지난 2007년 9월 27일부터 참여연대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변호사의 징계 전력을 검색할 수 있는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은 1993년 이후 최근까지(2010년 7월) 징계처분을 내린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내용, 징계사유, 징계사건번호, 징계결정일 등을 변협이 징계결정 공고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내용을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였다.

2010년 9월 말 현재, 이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서비스'에 입력된 징계사건은 모두 460건이며, 2번 이상 징계 받은 변호사가 34명 있기 때문에, 징계 받은 변호사 숫자는 총 411명이다.('자격상실에 따른 각하'의 경우가 14건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내용면에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인 만큼 징계정보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 460건에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변협 공고에 따른 징계 460건의 내역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460건의 징계유형별 분류

411명의 변호사가 받은 460건의 징계처분의 유형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의 경우 12.39%, 과태료의 경우 58.26%, 정직의 경우 24.13%, 가장 높은 수준이 제명과 자격상실의 경우를 합치면 5.22%이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전체 대비 51.09%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변호사 징계 유형별 징계 현황

징계유형		건수	비율	징계유형		건수	비율
과태료	견책	57건	12.39%	정직	1월	4건	0.87%
	100만 원	29건	6.30%		2월	24건	5.22%
	200만 원	67건	14.57%		3월	22건	4.78%
	300만 원	70건	15.22%		4월	16건	3.48%
	400만 원	5건	1.09%		5월	2건	0.43%
	500만 원	64건	13.91%		6월	14건	3.04%
	700만 원	4건	0.87%		8월	6건	1.30%
	800만 원	1건	0.22%		10월	1건	0.22%
	1,000만 원	15건	3.26%		1년	13건	2.83%
	1,500만 원	4건	0.87%		1년 6월	1건	0.22%
	2,000만 원	7건	1.52%		2년	8건	1.74%
	3,000만 원	2건	0.43%	소계(정직)		111건	24.13%
소계(과태료)		268건	58.26%	제명		10건	2.17%
				자격상실에 따른 각하		14건	3.04%
				총계		460건	100%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변호사법 제90조) 1) 견책, 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정직, 4) 제명, 5) 영구제명

연도별 징계내역과 특이점

특이할 만한 점으로는 2003년 이전까지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즉 1993년 이후 최근까지(2010년 7월) 내려진 과태료 600만 원 ~ 3000만 원(과태료의 최고액은 3000만 원임)은 모두 33건인데, 이 33건은 모두 2003년 이후에 나온 처분이다. 2003년 이전까지는 과태료 600만 원 ~ 3000만 원의 처분을 내릴만한 경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2003년 이후 징계처분을 더 엄하게 내리기 시작해서 그런지 의문스럽다.

지난 약 18년 동안의 변협공고 징계사건이 460건인 만큼, 매년 평균 25.5건 정도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총 460건의 변협 공고 징계사건 중 136건은 이른바 의정부 범조비리 사건으로 범조계에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던 1998년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매우 이례적이었던 1998년을 제외한 나머지 17년 동안만 살펴보면 324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즉 매년 평균 19건 정도 징계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징계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04년 이후 그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매년 변협 공고에 따른 징계건수를 보면, 2004년 이전에는 매년 10여 건 내외였는데, 2004년 이후부터 20~30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표에서 보이는 2010년의 경우에는 7월까지의 수치임). 이러한 현상은 엄격한 징계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수준에 부응한 결과이거나,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징계신청에 따른 것이거나 또는 변호사들의 직업윤리위반행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7〉 1993년~2010년 7월 현재 징계 460건(변협 공고) 연도별 징계유형 건수

		' 10 7월	9	8	7	6	5	4	3	2	1	0	99	98	97	96	95	94	93
견책			1	3	4	6	7	4		3	5	5	1	12		1	1	3	1
과태료 (만원)	100	1	3	1	3	4	3	2	4				3	1	1		1		2
	200	3	3	4	6	10	6	9	1	3		2	2	12	1	1	1	3	
	300	2	5	2	4	9	4	6	3	1	2	1	3	21	2	2	1	1	1
	400				1					2				2					
	500	1	3	5	2	2	4	1			2	2	3	34	3		1	1	
	600																		
	700	1		2				1											
	800						1												
	1000			5	2	1	2	4	1										
	1500					1	1	2											
	2000				2	2	1	2											
	3000				1			1											
정직	1월		1										2		1				
	2월			2		1				1	2		2	10		1		2	3
	3월		1		2			2	2				1	9	1		1		3
	4월			2		1	1		1			1		8		1	1		
	5월			1										1					
	6월			1	1	1		1	2					7					1

	8월								1					4				1	
	10월													1					
	1년			2				1					1	8			1		
	1년6월													1					
	2년			1			2	2			1				2				
제명										1				5	1	2		1	
자격상실에 따른 각하			4	6	4														
합	460건	8	21	37	32	38	32	38	15	11	12	11	18	136	12	8	8	12	11

2번 이상 징계 받은 변호사들

징계 받은 변호사 411명 중 2번 이상 징계 받은 변호사들은 모두 34명이다.

〈표 8〉 2번 이상 징계 받은 변호사들

총 460건의 징계 중, 2번 이상 징계 받은 변호사	
2번 징계 받은 경우	23명
3번 징계 받은 경우	9명
4번 징계 받은 경우	1명
6번 징계 받은 경우	1명
합계	34명, 징계 건수 83건

2회 이상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34명이 받은 징계의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직업윤리 위반의 수준이 심각한 이들이라는 점이다. 34명중 '건축 - 건축'을 받은 1명과 '건축 - 과태료 100만 원'을 받은 다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과태료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6번이나 징계 받은 김*식 변호사는 "정직 2월 - 정직 2월 - 정직 3월 - 과태료 200만 원 - 정직 3월 - 정직 1년"이라는 심각한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3번 징계를 받은 김*환 변호사는 "정직 1년 - 제명 - 재등록후 정직 2년", 또 이*재 변호사는 "건축 - 정직 3월 - 제명" 처분을 받았다. 조*환 변호사는 "정직 4월 - 정직 8월 - 정직 2년"처분을 받았다. 2번 징계를 받은 이들 중에도, 최*식 변호사는 "정직 2월 - 정직 4월"을, 조*규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 원 - 과태료 1천만 원"을, 임*성 변호사는 "과태료 2천만 원 - 과태료 700만 원"을 처분받았다.

변호사징계정보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이 이처럼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변호사임을 미처 모른 채 사건을 맡겼다가, 2번째, 3번째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번 이상 징계를 받은 이들 34명이 받은 83건의 징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9〉 2번 이상 징계 받은 34명의 징계내역(83건)

성명	출생연도	사사회수	최중징계내용	징계사유요지	징계 결정일
강*기	1957	28회	과태료 300만원	폭행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	1998
			과태료 300만원	소송위임장 미제출	2004
김*환	1952	23회	정직1년	의뢰인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소취하서 법원에 제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미지급	1995
			제명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또 의뢰인에게 반환하지도 않음	1996
			(재등록) 정직2년	패소시 반환하기로 약정했던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일이 수 차례 있으며, 변론도 불성실하게 함	2005
김*엽	1943	8회	과태료 300만원	변호인 선임제 미제출	2001
			자격상실 각하	교제비 명목 금품수수	2008
김*익	1955	29회	과태료 100만원	96건의 사건수임규칙 위반 및 회비납부의무 위반	1993
			제명	손해배상사건 등 258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3억338만원 교부, 변호사사무원채용 미신고, 손해배상사건수임 경위서 미제출 등	1998
			정직1년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의뢰인과 상의없이 보험사와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등	1998
김*식	1946	14회	정직2월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이 받아야하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자신이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상의 성공보수금으로 가져감	1993
			정직2월	의뢰인으로부터 과다하게 수령한 성공보수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환을 거부하다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분쟁을 조장함	1994
			정직3월	의뢰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에 계약대로 갚지 않고,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으면 안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미리 받음	2003
			과태료 200만원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 기간 중에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함	2004
			정직3월	수임제한위반 등	2007
			정직1년	판결반환금 횡령, 사무직원 감독소홀	2008
김*우	1963	37회	과태료 500만원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보수기준을 초과한 50%의 성공사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형사합의금은 약정대로 수령하는 등 품위를 손상	2000
			과태료 1000만원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광고규정위반	2008
김*수	1960	34회	과태료 300만원	품위유지 위반	2006
			과태료 500만원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등)	2006
김*모	1947	30회	과태료 500만원	형사사건 등 10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960만원을 교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1998
			과태료 500만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2009
박*일	1917	일본 고등문관 시험	정직3월	법률사무소를 2곳에 설치하여 2중 사무실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함	1993
			제명	국유재산에 대해 자신의 의뢰인이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4억원을 수령함	1994
박*식	1956	33회	과태료 200만원	착수금 등 수령 후 소송미수행 및 금전미반환, 공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일부 유용	2000
			과태료 300만원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받았으나, 항소기한을 지나쳐버려 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음	2005
			과태료 1000만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조세법 처벌법 위반)	2008
배*연	1953	20회	과태료 300만원	자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채용에 응시한 여대생 면접시 성적 저속한 표현을 하여 변호사품위손상	1994
			과태료 300만원	훈외 관계로 변호사 품위 손상, 변호사 회비 12개월분 미납	1997
			과태료 100만원	진정인을 폭행하여 벌금30만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손상	1999
백*성	1936	고등고시 14회	과태료 300만원	사건 알선료 지급	1996
			자격상실 각하	알선료 지급	2009

백*기	1963	37회	과태료 200만원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2004
			자격상실 각하	성실의무위반 및 교제비 명목의 금품수수	2007
손*락	1961	35회	정직1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에게 신중히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건을 말기도록 하고 1억6천만원을 편취함. 그리고 형사사건의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검사에게 청탁하겠다고면서 1천만원을 요구하고 실제 600만원을 편취함 등	2004
			과태료 300만원	정직기간 중 변호사의 직무수행	2006
안*수	1931	고등고시 13회	견책	사무직원에게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무직원이 상고기한을 지날 때까지 상고를 하지 않음	1996
			견책	수임제한 위반	2006
양*식	1954	37회	과태료 500만원	퇴직금반환소송에서 법원의 조정명령에 따라 피고측으로부터 2천7백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중 1,340여만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음	2005
			정직2월	미상	2008
윤*호	1965	35회	과태료 200만원	선임계 미제출	2006
			과태료 1000만	품위유지 위반	2006
			과태료 500만원	국세체납	2009
이*성	1961	36회	견책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2001
			과태료 100만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2009
이*재	1959	29회	과태료 200만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쳐버려 상고이유서 불제출에 따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음	1995
			과태료 500만원	소개 손배사건 6건 수임 및 소개비 교부약속	1998
이*환	1958	26회	과태료 300만원	손배사건 등 2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소개비명목으로 370만원을 교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1998
			과태료 500만원	피고소 사건 변호를 성실히 하지 않아, 수임료 2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명도소송을 위임받아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2001
이*재	1929	고등고시 14회	견책	협회회칙 및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위반하며 성공보수금을 주장함	1993
			정직3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지나쳐버려 상고이유서 불제출에 따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음	1995
			제명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1억원을 받은 뒤, 그 중 3천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고 단기간 차용기로 했으나, 약속기한내에 돌려주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가압류하게 하고, 산재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4천3백만원의 조정금을 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2천여만원은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1996
이*기	1952	16회	과태료 300만원	토지매매 사기를 당한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토지매매 사기꾼을 형사고소하고 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는데, 그 피고소인의 토지매매 사기사건 형사재판 항소심의 변호를 맡는 등 사건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함	1998
			과태료 500만원	형사사건 250여건의 수임경위서 부실 제출 및 성공보수수를 미리 수령하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함	1998
이*우	1934	고등고시 9회	정직3월	성공보수금 선수령으로 변호사보수규칙을 위반하고,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성공보수금 중 2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음	1998
			정직2년	의뢰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변론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당하고도 돌려줘야할 수임료를 돌려주지않음. 또 의뢰인에게 돌려줘야할 3천여만원의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을 수차례 저지르고, 민사,행정,형사고소사건을 수임받고도 정해진 기일안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고 형사고소대리인역할을 성실히 하지 않는 등	2004
			정직3월	매매대금청구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중 9천5백만원을 자신의 아들인 변호사사무실 사무실장이 임의사용토록 하고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2004
임*성	1951	23회	과태료 2000만	품위유지 위반	2007
			과태료 700만원	성공보수 선수령 및 변제약정 불이행	2008

장*욱	1943	고등고시 13회	과태료 200만원	의뢰받은 사건에서 패소한 뒤 항소사건도 수임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기일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1심 패소판결이 확정되게 하고, 2중 사무실을 개소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함	1994
			과태료 500만원	원고측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3천백여만원을 피고로부터 받았으나, 원고가 수 차례가 독촉했음에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다가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해야 원고에게 전달함	1995
			과태료 300만원	원고측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여 원을 피고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원고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아 원고들과 분쟁을 야기함	2002
			과태료 200만원	보수전환금지 위반	2006
장*건	1946	14회	과태료 500만원	형사사건 피고인측한테서 착수금을 수령한후, 보석결정이 나기전에 보석에 대한 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수령함	1994
			과태료 500만원	소개 손해사건8건 수임 및 소개비 약정 교부	1998
장*청	1961	31회	과태료 200만원	교통사고 피해자측을 대리하여 보험사로부터 조정금 4천6백만원을 받았으나, 변호사보수등을 제외한 2천9백여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않아, 의뢰인으로부터 미지급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함	2000
			정직4월	의뢰인으로부터 파산신청사건을 수임받고 수임료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서야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후에도 재판(심문)기일 4회중 2회 불출석하고 파산신청기각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 8개월 실형선고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 자격이 없는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함	2003
			과태료 300만원	산재사고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도 받았으나, 그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소장을 법원을 제출하고 그 뒤에도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고 기일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게 하였고, 그 후 재차 제기한 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아무 연락없이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2004
조*환	1956	27회	정직4월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도 받았으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고 법정변론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2000
			정직8월	교통사고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에게 지급않고 횡령함. 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수임하고 수임료도 받았으나, 소제기 후 재판에 2회 이상 계속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 결정이 나게 하는 등	2003
			정직2년	사기 혐의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았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징역1년 실형을 받게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제시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2005
조*규	1959	39회	과태료 300만원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2007
			과태료 1000만원	상고기간 도과, 손해배상금 미지급	2008
최*식	1960	24회	정직2월	형사사건 항소제기 기한 넘겨 의뢰인의 항소기회 상실 등	1994
			정직4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승소금액을 임의대로 처분	1995
최*석	1962	27회	과태료 500만원	형사사건의 수임료로 총 6,000만원을 수령하고도 소속 변호사회 경유도 없었고 선임신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호사 품위손상	1999
			과태료 300만원	유상으로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소개 등	2003
한*석	1953	24회	과태료 300만원	소송위임장 미제출	2007
			자격상실 각하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비명목 금품수수	2008
허*표	1953	군법무관 5회	정직6월	형사사건 등 20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799만원을 교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1998
			과태료 200만원	성실의무 위반	2006
황*환	1955	21회	과태료 200만원	형사사건의 수임료로 총 2,5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의뢰인에게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변호사 품위를 손상	1999
			과태료 300만원	계쟁권리 양수	2008

ISSUE 3

2년 전 조사 때와 달라지지 않은 부끄러운 법률가 집단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사례를 조사한 까닭
-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사례 조사 방법과 특징
-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 뜨거운' 사건수임사례들
- 2008~2010년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자료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사례를 조사한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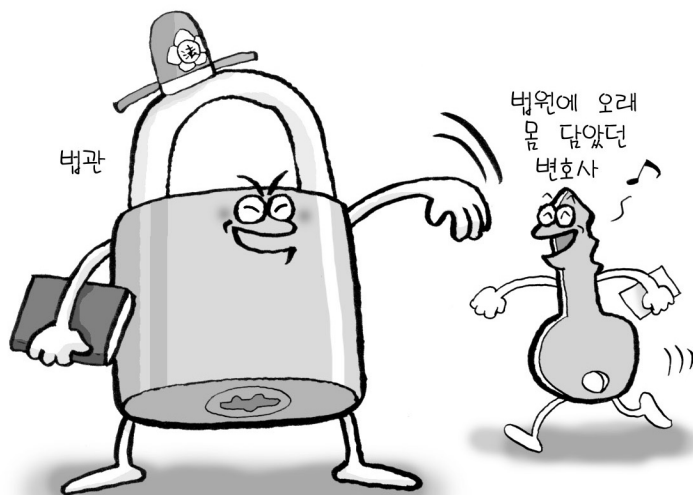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사법감시 21호'를 통해 2000년부터 2004년 8월 사이 퇴직한 판·검사를 대상으로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지난 2008년 10월에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퇴직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조사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던 2008년의 보고서를 통해서, 퇴직한 지 3일 만에 자신이 몸담았던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의 사례를 비롯해, 모두 20명의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49건이 있고, 퇴직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22건이나 될 정도로 이른바 '전관'으로서의 이점을 노린 '부끄러운' 사건수임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실태가 법률가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왜곡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법원장급 법조인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퇴직 전관 변호사들의 최종 근무지 사건 일시 수임 제한'과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청한 바 있다.

2008년 10월에 보고서를 발표한 지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퇴직 법원장급(대법관 포함)들의 사건수임 행태를 다시 조사하였다.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퇴직한 대법관 중에서 김용담 대법관과 김영란 대법관의 사례와 같이, 퇴직 후에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지 않거나 대형로펌에 취직하지 않는 모범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퇴직 법원장들의 행태는 2년 전 조사 때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법률가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촉구하고, 사건수임제한이나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senior) 법관제'의 한국형 도입 등, 퇴직하고 곧바로 변호인으로서는 자신의 최종근무법원의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사례 조사 방법과 특징

2008년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퇴직한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출신(이하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뒤 1년 이내에 수임한 사건 중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파악하였음.

〈표 10〉 2008 ~ 2010년 2월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

퇴임연도	고법원장급 이상	지법원장급
2008년	김황식(대법관), 박송하(서울고법), 권남혁(부산고법)	이주홍(서울중앙), 이호원(서울가정)
2009년	고현철(대법관), 김용담(대법관), 오세빈(서울고법), 박용수(부산고법), 손기식(사법연수원)	오세욱(광주지법), 이윤승(서울가정), 송진현(서울행정), 유원규(서울가정)
2010년	이태운(서울고법), 황영목(대구고법), 이기중(부산고법), 김관재(광주고법), 박국수(사법연수원)	이인재(서울중앙), 김용균(서울행정)

이들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선임계나 이들이 수임사건의 관할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선임계(또는 소송위임장)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음. 따라서 참여연대는 판결문에는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러 경로로 공개된 판결문들을 조사해 조사대상인 퇴직 법원장이 수임한 최종근무 법원의 사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퇴직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기간이 1년 이내인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음.

물론 이같은 조사방식을 통해 확인된 수임사례들은 각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전 최종근무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수임한 사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참여연대는 조사시점(2010년 6~8월 사이)까지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이 때문에 △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 △ 판결은 선고되었으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의 수임 사례는 조사할 수 없었음.

아울러 판결문을 통해 조사대상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례임을 파악했으나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을 비롯해 해당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아래의 조사결과에서는 제외하였음. 따라서 실제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제한적인 조사방식과 범위에 국한된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도 그 실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본 자료에서 '수임일'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일자로 봄. 단,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명이나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경우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사건과 관련해 기타 서류(예 : 준비서면, 참고서면, 열람및복사신청 등)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공판과 관련한 서류(예 : 변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 등)를 발송한 최초의 일자로 봄. 이러한 사례의 경우는 해당 변호사의 실제 수임일은 조사 자료에 기재된 일자보다 더 앞설 수 있음.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낮 뜨거운' 사건수임사례들

■ [조사결과 1]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는 여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 파악된 법원장급 이상의 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아래 [표 11]와 같음.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경우는 고현철 대법관으로 무려 46건이나 확인되었음.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도 최소 38건이 발견되었고,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은 22건,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은 18건, 박송하 전 서울고법원장도 12건이 확인되었음.(<표 11> 참조)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11-1> 참조)

〈표 11〉 2008 ~ 2010.2 퇴직 후 1년내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이 확인된 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퇴직일이 빠른 순)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최종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이름	최종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박송하	서울고법	'08.02.13	12	이호원	서울가정	'08.02.06	3
오세빈	서울고법	'09.02.07	22	이주홍	서울중앙	'08.02.13	3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18	이윤승	서울가정	'09.02.07	1
고현철	대법원	'09.02.17	46	송진현	서울행정	'09.02.07	2
이태운	서울고법	'10.02.08	1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38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9	이인재	서울중앙	'10.02.08	2
이기중	부산고법	'10.02.08	10	김용균	서울행정	'10.02.08	2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5	소 계		7명 / 51건	
소 계		8명 / 123건		총 계		15명 / 174건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이태운·황영목·이기중·김관재·이인재·김용균 등 2010년 2월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퇴직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앞서 조사방법 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 사례들의 개수 또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나 변호인선임계(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이 확인되거나 해당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가 확인되는 사례에만 국한된 것으로 실제 수임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파악된 사례가 적은 이들의 경우에도 실제 수임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임. 조사대상자중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조사시점(2010년 6~8월) 현재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권남혁 전 부산고법원장과 유원규 전 서울가정법원장 두 명에 불과함(물론 이들의 경우에 수임한 사례가 있음에도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는 가능성도 있음).

대법관중 2008년에 퇴임한 김황식 전 대법관의 경우는 퇴직 후 감사원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했고, 2009년 퇴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의 경우는 퇴직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경우임. 아울러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손기식, 박국수 전 연수원장의 경우에는 퇴직 전 근무 기관이 직접 재판을 다루는 법원이 아닌만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임.

〈표 11-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중 퇴직후 1년내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수입한 것이 확인된 법원장 출신 변호사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입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최종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이름	최종근무지	퇴직일	확인가능 사례(건)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13	김상기	서울행정	'04.02.04	9
김재진	부산고법	'05.02.02	2	황인행	서울가정	'04.02.07	3
김동건	서울고법	'05.02.11	19	김명길	인천지법	'04.04.15	12
강완구	서울고법	'05.11.04	5	강병섭	서울중앙	'04.08.12	10
곽동호	특허법원	'06.02.08	4	조용무	대전지법	'05.02.21	15
정호영	서울고법	'06.06.21	5	김인수	서울행정	'05.02.14	2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5	강문중	부산지법	'05.11.04	6
				김목민	서울북부	'05.11.04	9
				변동걸	서울중앙	'05.11.04	1
				안성희	서울동부	'05.11.04	10
고법원장 출신 사례		7명 / 53건		이광렬	서울서부	'05.11.04	28
지법원장 출신 사례		13명 / 157건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43
총 계		20명 / 210건		이중찬	서울북부	'06.08.24	9

-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입했을 수 있음.
- 주2) 자세한 수입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입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 [조사결과 2] 퇴직 한 달도 안돼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법정에 서기도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07건이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퇴직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수입사례는 모두 66건이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입사례도 16건에 이르렀음. (표 12 참조)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수입사례의 경우, 지난 2008년 조사 당시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과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7건과 5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과 황영목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4건씩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입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 (표 12-1 참조)

초단기 1개월 이내 사건 수입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 : 4건 발견

황영목 전 대구고법원장 : 4건 발견 (이 가운데 3건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유사한 사건을 동시에 수입한 경우임)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 : 3건 발견

퇴직 후 6개월 이내의 수입사례가 많이 발견된 대표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 : 29건 발견

고현철 전 대법관 : 20건 발견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 : 10건 발견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 : 10건 발견
 이기중 전 서울고법원장 : 10건 발견

앞서 [조사결과 1]에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 수임 사례가 38건이나 되어 조사대상 퇴직 법원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사례가 발견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건 수임 사례가 29건이었고, 이 가운데 세 달도 되지 않아 수임한 사례만도 21건으로 조사되었음.이 밖에 고현철 전 대법관의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임한 사건이 20건이나 발견되었고, 오세빈·박용수·이기중 전 고법원장의 경우도 각각 10건씩 확인되었음.

〈표 12〉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6개월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1개월 이내	2~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계	이름	1개월 이내	2~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계
박송하		4	2	6	이호원				0
오세빈		7	3	10	이주홍				0
박용수	4	2	4	10	이윤승			1	1
고현철	1	5/	14	20	송진현			2	2
이태운		1		1	오세욱	4	17	8	29
황영목	4	4	1	9	이인재		1	1	2
이기중	1	6	3	10	김용균		2		2
김관재	2	2	1	5	소 계	4	20	12	36
소 계	12	31	28	71	총 계	16	51	40	107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이태운·황영목·이기중·김관재·이인재·김용균 등 2010년 2월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퇴직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표 12-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중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의 기간에 따른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6개월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1개월 이내	2~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계	이름	1개월 이내	2~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계
신정치	5	1	6	12	김상기		2	3	5
김재진		1	1	2	황인행		2		2
김동건	1	6	6	13	김명길		4	5	9
강완구		1	3	4	강병섭		5	3	8
곽동호		1	3	4	조용무		2	6	8
정호영		4	1	5	김인수		1		1
김진기	5			5	강문중	1	2		3
					김목민		2	4	6
					변동걸		1		1

고법출신	11	14	17	45	안성희	1	4	2	7
지법출신	11	49	44	104	이광렬	2	8	5	15
계	22	66	61	149	박행용	7	11	12	30
누계	22	88	149		이종찬		5	4	9

-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 [조사결과 3] 최종근무법원 사건 최단기 수임 1위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퇴직 12일 만에 수임), 2위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퇴직 16일 만에 수임)

[조사결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는 16건이나 발견되었음. 2007년 3월 퇴직한 지 3일 만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낯뜨거운 사건수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의 사례만큼은 아니지만, 6명의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최종근무법원의 관할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최소한 16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13-1〉 참조).

〈표 13〉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관할사건 초단기 수임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개월 이내의 사건, 수임까지 기간이 짧은 순)

퇴직 후 수임까지 걸린 기간	퇴직 법원장	수임사건법원 (최종근무법원과 동일)	퇴직일	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12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2.19	2009노6	특경가법위반(조세)
16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09.25	2009고단2529	사기 등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09.25	2009노2195	강제추행 등
17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2.24	2009노128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2.25	2010노53	살인
19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2.26	2009노141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22일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10.03.02	2010누10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불허처분취소
23일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황영목	대구고법	'10.02.08	'10.03.03	2009나100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이기중	부산고법	'10.02.08	'10.03.03	2010나1906	매매대금
	김관재	광주고법	'10.02.08	'10.03.03	2009나5710	소유권말소등기
25일	박용수	부산고법	'09.02.07	'09.03.04	2005나10623	손해배상(기)
26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10.05	2009노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8일	고현철	대법원	'09.02.17	'09.03.17	2009다43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30일	오세욱	광주지법	'09.09.09	'09.10.09	2009카합1077	공사및입방해금지가처분

-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 주2) '수임일'은 변호인선임제 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이 최초로 확인된 일자를 의미함. 따라서 실제 수임일은 조사된 날짜보다 앞당겨질 수 있음.
- 주3) 이태운·황영목·이기중·김관재·이인재·김용균 등 2010년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모두 지난 2월 8일 퇴직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주4)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표 13-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관할사건 초단기 수입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입일까지 1개월 이내의 사건)

퇴직 후 수입까지 걸린 기간	퇴직 법원장	수입사건법원 (최종근무법원과 동일)	퇴직일	수입일	사건번호	사건명
3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08	2007노60	공직선거법
6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14	2006노236	사기 등
12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0	2005고합345	부정처사후수뢰 등
	이광렬	서울서부	'05.11.04	'05.11.16	2005고단2095	마약관리법(대마)
13일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17	2003나18793	종중대표자확인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17	2003나466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4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2	2006나2519	소유권말소등기
16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1	2006노636	특가법(배임)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20	2004나2887	손해배상
17일	김동건	서울고법	'05.02.11	'05.02.28	2005노416	뇌물공여
18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3	2007노52	폭행치사 등
19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7	2006노101	폭력행위처벌법
20일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2.28	2006고합34	특경가법(횡령)
22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2.27	2007노5	특경가법(조세)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2.26	2004노250	특경가법(사기)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3.02	2006노191	성매매특별법
25일	안성희	서울동부	'05.11.04	'05.11.29	2005고단2577	부동산등기법
28일	신정치	서울고법	'04.02.04	'04.03.03	2004노388	강도상해 등
	이광렬	서울서부	'05.11.04	'05.12.02	2005고단2245	사기
	강문중	부산지법	'05.11.04	'05.12.02	2005고합456	특경가법(횡령)
29일	김진기	대구고법	'07.02.05	'07.03.06	2007노136	뇌물수수
	박행용	광주지법	'06.02.08	'06.03.09	2005가합10502	토지인도 등

-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입했을 수 있음.
- 주2) 자세한 수입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입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 [조사결과 4] 퇴직 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적지 않아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직후 수임한 최종근무법원 사건 중에는, 이들이 퇴직하기 전부터 해당 법원에서 다루어 지고 있던 사건들도 다수 발견됨. 즉 퇴직 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에 퇴직한 법원장들이 '끼어드는' 사례임. 이는 퇴직 법원장들을 통한 '전관예우' 효과를 의도한 선임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으며, 이러한 의도에 퇴직 법원장들이 부응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이같은 사정은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 조사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음(표 14-1) 참조)

〈표 14〉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이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퇴직 직후 수임한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수임사례가 많은 순)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급 출신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시작된 사건 수임 사례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시작된 사건 수임 사례
오세빈	'09.02.07	6	오세욱	'09.09.09	2
황영목	'10.02.08	5	이호원	'08.02.06	1
이기중	'10.02.08	5	김용균	'10.02.08	1
박용수	'09.02.07	3			
김관재	'10.02.08	3			
박송하	'08.02.13	2			
고현철	'09.02.17	1			

-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황영목·이기중·김관재·김용균 등 2010년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모두 지난 2월 8일 퇴직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주3)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참고

〈표 14-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퇴직 이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퇴직 직후 수임한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시작된 사건 수임 사례	이름	퇴직일	퇴직일 이전부터 시작된 사건 수임 사례
신정치	'04.02.04	4	김명길	'04.04.15	1
김재진	'05.02.02	1	강병섭	'04.08.12	2
김동건	'05.02.11	3	조용무	'05.02.21	2
강원구	'05.11.04	2	안성희	'05.11.04	2
곽동효	'06.02.08	3	김목민	'05.11.04	2
김진기	'07.02.05	4	강문중	'05.11.04	2
			박행용	'06.02.08	9

-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자세한 수임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 [조사결과 5] 변호사가 된 퇴직 법원장들, 형사사건 수입 경향도 여전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 175건 가운데 여전히 형사사건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확인가능한 사례 중 형사사건이 모두 79건(42.9%)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84.2%), 이기중 전 부산고법원장(60%),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55.6%)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을 형사사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됨.

〈표 15〉 2008~2010.2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확인된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입사례 중 형사사건 현황
(퇴직일로부터 수입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급 이상 출신						지방법원장급 출신					
이름	형사사건	민사사건	기타사건	계	형사사건 비율(%)	이름	형사사건	민사사건	기타사건	계	형사사건 비율(%)
박송하	4	4	4	12	33.3	이호원			3	3	가정
오세빈	8	11	3	22	36.4	이주홍		3		3	-
박용수	10	5	3	18	55.6	이윤승			1	1	가정
고현철	12	26	8	46	26.1	송진현			2	2	행정
이태운	1			1	-	오세욱	32	2	4	38	84.2
황영목	2	6	1	9	22.2	이인재		2		2	100
이기중	6	3	1	10	60	김용균			2	2	행정
김관재		2	3	5	-	소 계	32	7	12	51	62.7
소 계	43	57	23	123	34.9	총 계	75	64	35	174	43.1

- 주1) 이호원, 이윤승(이상 서울가정법원), 송진현, 김용균(이상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는 최종근무법원이 전문법원이기 때문에 형사 또는 민사사건 사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 주2)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입했을 수 있음.
- 주3) 이태운·황영목·이기중·김관재·이인재·김용균 등 2010년 퇴직 법원장들의 경우는 모두 지난 2월 8일 퇴직으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된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입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주4) 상세내역은 별첨 '법원장 출신 변호사별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입사례' 참고

〈표 15-1〉 2008년 10월 발표, 2004~2007년 퇴직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확인된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입사례 중 형사사건 현황 (퇴직일로부터 수입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고등법원장 출신						지방법원장 출신					
이름	형사 사건	민사 사건	기타 사건	계	형사사건 비율(%)	이름	형사 사건	민사 사건	기타 사건	계	형사사건 비율(%)
신정치	8	5		13	61.5	김명길	12			12	100
김재진	2			2	100	강병섭	8		2	10	80
김동건	16	3		19	84.2	조용무	3		12	15	20
강완구	1	3	1	5	20	안성희	10			10	100
정호영	5			5	100	김목민	9			9	100
김진기	5			5	100	이광렬	28			28	100
곽동효			4	4	특허	강문중	6			6	100
						변동걸	1			1	100
						박행용	32	6	5	43	74.4
						이종찬	9			9	100
고법출신	37	11	5	53	69.8	황인행			3	3	가사
지법출신	118	6	33	157	75.1	김상기			9	9	행정
계	155	17	38	210	73.8	김인수			2	2	행정

- 주1) 곽동효(특허법원), 황인행(서울가정법원), 김상기, 김인수(이상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는 전문법원 사건수입만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형사 또는 민사사건 사례는 파악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 주2) 이 표의 사례 건수는 2008년 조사 당시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입했을 수 있음.
- 주3) 자세한 수입사례는 2008년 10월 19일 참여연대 발표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입사례 조사 - 이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조

※ 퇴직 법원장들의 퇴직 직후 최종근무지 사건수입과 재판결과에 대한 분석 관련

이번 조사대상 사건들 가운데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측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포함)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음. 이는 '전관예우' 효과를 기대해 높은 수입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퇴직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법조시장의 관행이 적어도 합리적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앞서도 밝혔듯이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의 변호사들의 사건 수입사례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조사대상 사건들마다 특수성이 있어 각 사건들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 결과를 놓고 '전관예우' 효과가 실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더욱이 '전관예우' 효과가 재판의 결과 못지않게, 그 진행과정에 있어 전관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이나 변론의 횟수를 늘이는 등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 분석 및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2008~2010년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자료

〈표 16〉 2008년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2010년 7월 31일 이전까지의 사건)

퇴직일~수임일(일)란의 'a' 는 30일 이하, 'b' 는 31~90일 'c' 는 91~180일, 'd' 는 181~365일을 의미함

박송하		최종근무법원	서울고등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6-06-21 ~ 2008-02-13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서울고등 법원	2008-02-13	2008-03-27	43	b	2008노179	형사2부(나)	특경가법위반(배임) 등	2008-01-21
		2008-03-28	44	b	2007나104739	민사30부(나)	출입금지 등	2007-11-07
		2008-04-10	57	b	2008노491	형사2부(다)	특경가법위반(사기) 등	2008-02-18
		2008-04-14	61	b	2008노732	형사7부(나)	특경가법위반(배임) 등	2008-03-20
		2008-05-26	103	c	2008누11442	행정5부(나)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2008-05-08
		2008-07-14	152	c	2008나52125	민사22부(다)	소유권말소등기	2008-06-13
		2008-09-24	224	d	2008노2194	형사6부(나)	공직선거법위반 등	2008-08-29
		2008-10-01	231	d	2008나79007	민사6부(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08-09-03
		2008-10-10	240	d	2008나86661	민사8부(나)	손해배상(공)	2008-10-01
		2008-11-13	274	d	2008누12940	행정4부(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008-05-22
		2008-12-19	310	d	2008누22718	행정4부(나)	폐기물처리예대한 조치명령취소	2008-08-13
		2009-02-10	363	d	2008누37376	행정6부(다)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008-12-22

이주홍		최종근무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6-08-24 ~ 2008-02-13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02-13	2009-02-09	362	d	2008가단426623	민사21단독	건물명도 등	2008-12-02	
		2009-02-09	362	d	2008가단449787	민사132단독	건물명도 등	2008-12-18	
		2009-02-09	362	d	2008가단461466	민사21단독	건물명도 등	2008-12-29	

이호원		최종근무법원	서울가정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6-08-24 ~ 2008-02-06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서울가정법원	2008-02-06	2008-08-20	196	d	2008드단51710	가사3단독	이혼 및 재산분할	2008-06-10
		2008-08-24	200	d	2008드단49083	가사3단독	이혼 및 위자료	2008-05-30
		2008-12-08	306	d	2007드합14384	가사3부(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07-12-17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주2) 이 표에서 '수임일'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명의로 변호인선임제 또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일자로 봄.

단,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명의로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제 또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경우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사건과 관련해 기타 서류(예 : 준비서면, 참고서면, 열람및복사신청 등)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공판과 관련한 서류(예 : 변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 등)를 발송한 최초의 일자로 봄. 따라서 이 경우의 실제 수임일은 조사자료에 기재된 일자보다 앞설 수 있음.

〈표 17〉 2009년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입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입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2010년 7월 31일 이전까지의 사건)

퇴직일~수입일(일)란의 'a'는 30일 이하, 'b'는 31~90일 'c'는 91~180일, 'd'는 181~365일을 의미함

고현철		최종근무법원	대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3-02-18 ~ 2009-02-17	
수입사건법원	퇴직일	수입일(추정)	퇴직일~수입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대법원	2009-02-17	2009-03-17	28	a	2009다4374	민사1부(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2009-01-13
		2009-03-24	35	b	2009다17363	민사2부(카)	소유권이전등기	2009-02-27
		2009-03-27	38	b	2009도2177	3부(바)	특경가법위반(배임)	2009-03-05
		2009-04-14	56	b	2009두6063	특별3부(바)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최소	2009-05-01
		2009-04-28	70	b	2008도11726	2부(카)	특가법위반(조세)	2008-12-18
		2009-04-29	71	b	2009다26299	민사1부(다)	주식매수대금	2009-04-03
		2009-06-02	105	c	2009도3918	1부(가)	특경가법위반(사기)	2009-05-11
		2009-06-08	111	c	2009다32362	민사3부(차)	임금등	2009-05-11
		2009-06-08	111	c	2009다32522	민사1부(나)	종업원지위확인	2009-05-11
		2009-06-08	111	c	2009다42062	민사3부(마)	계약금	2009-06-12
		2009-06-25	128	c	2009다44365	민사3부(마)	손해배상	2009-06-19
		2009-06-25	128	c	2009다45740	민사1부(가)	소유권이전등기	2009-06-24
		2009-07-01	134	c	2009도5945	1부(사)	지방교육자치법위반	2009-06-29
		2009-07-02	135	c	2009다40738	민사1부(사)	보증금부존재확인	2009-06-09
		2009-07-15	148	c	2009후1798	특별2부(아)	권리법위확인(상)	2009-06-19
		2009-07-17	150	c	2009다45948	민사1부(가)	공사대금	2009-06-25
		2009-07-20	153	c	2009도5794	1부(다)	특경가법위반(횡령)	2009-06-25
		2009-07-21	154	c	2009다53154	민사1부(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9-07-15
		2009-08-04	168	c	2009도6431	2부(라)	건축법위반등	2009-07-10
		2009-08-11	175	c	2009다54874	민사3부(차)	토지인도	2009-07-21
		2009-08-17	181	d	2009도6193	2부(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9-07-06
		2009-08-20	184	d	2009도5655	3부(타)	업무상배임	2009-06-25
		2009-08-31	195	d	2009도7017	2부(자)	상호저축은행법위반	2009-07-23
		2009-08-31	195	d	2009도7040	2부(자)	사전뇌물수수 등	2009-07-23
		2009-08-31	195	d	2009다71855	민사3부(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2009-09-17
		2009-09-02	197	d	2009두12648	특별1부(사)	우선협상대상자지위철회최소	2009-07-29
		2009-09-03	198	d	2009도8571	3부(타)	모해위증	2009-08-28
		2009-09-07	202	d	2009다54355	민사2부(자)	손해배상(기)	2009-07-20
		2009-09-21	216	d	2009다71350	민사3부(바)	공사대금	2009-09-16
		2009-09-24	219	d	2009다72643	민사1부(나)	부당이득금	2009-09-21
		2009-09-25	220	d	2009다67665	민사2부(자)	명도청구	2009-08-31
		2009-09-25	220	d	2009다73011	민사3부(마)	소유권이전등기	2009-09-22

	2009-10-15	240	d	2009다56412	민사2부(카)	공사대금	2009-07-27
	2009-10-16	241	d	2009다78665	민사1부(가)	주권인도	2009-10-09
	2009-11-10	266	d	2009후3350	특별1부(사)	등록무효(상)	2009-09-28
	2009-11-10	266	d	2009후3312	특별1부(사)	등록무효(상)	2009-09-28
	2009-11-12	268	d	2009도11679	3부(바)	특가법위반(사기)	2009-10-29
	2009-11-20	276	d	2009다77242	민사3부(바)	골프회원권분양대금 반환청구등	2009-10-06
	2009-12-21	307	d	2009다92487	민사3부(마)	대여금	2009-11-23
	2009-12-28	314	d	2009두22782	특별3부(바)	주택사업계획승인 반려처분취소	2009-12-16
	2010-01-07	324	d	2009다89849	민사3부(바)	지분권부존재확인	2009-11-16
	2010-01-27	344	d	2009다105369	민사2부(카)	대여금 등	2009-12-31
	2010-02-01	349	d	2009다92401	민사1부(다)	배당이의	2009-11-23
	2010-02-04	352	d	2009후3329	특별1부(사)	등록취소(상)	2009-09-28
	2010-02-05	353	d	2010다996	민사3부(바)	소유권이전등기 등	2009-07-21
	2010-02-16	364	d	2010두1743	특별1부(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0-01-19

오세빈		최종근무법원	서울고등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8-02-13 ~ 2009-02-07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서울고등법원	2009-02-07	2009-03-23	44	b	2009노667	형사8부(나)	업무상횡령	2009-03-13
		2009-04-01	53	b	2009노404	형사11부(나)	사문서위조 등	2009-02-12
		2009-04-02	54	b	2009르1092	가사1부(다)	이혼 등	2009-03-30
		2009-04-13	65	b	2009나6549	민사28부(다)	소유권이전등기등	2009-01-20
		2009-04-21	73	b	2008나99094	민사6부(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8-11-06
		2009-05-04	86	b	2009노887	형사1부(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09-04-15
		2009-05-01	83	b	2008나102853	민사32부(다)	소유권이전등기	2008-11-17
		2009-06-08	121	c	2009르1412	가사2부(다)	이혼및재산분할 등	2009-05-20
		2009-06-16	129	c	2009나42286	민사21부(나)	대금반환	2009-05-21
		2009-06-19	132	c	2009노1331	형사4부(다)	특가법위반(뇌물)	2009-05-28
		2009-08-10	184	d	2009노1872	형사1부(다)	특경가법위반(수재등)	2009-07-22
		2009-08-20	194	d	2009누1329	행정6부(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09-01-09
		2009-08-27	201	d	2007나17316	민사1부(다)	점용료	2007-02-09
		2009-09-09	214	d	2009초재2086	형사3부(다)	특경가법위반(사기) 등, 재정신청	2009-08-20
		2009-09-23	228	d	2009나9395	민사9부(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말소	2009-01-29
		2009-09-24	229	d	2009나18870	민사16부(다)	주식양도잔금	2009-02-23
		2009-09-29	234	d	2009노2164	형사1부(다)	특가법위반(뇌물)	2009-08-24
		2009-10-14	249	d	2009나47465	민사24부(나)	사해행위취소	2009-06-09
		2009-11-05	271	d	2009노2792	형사4부(나)	배임수재 등	2009-10-23
		2009-11-19	285	d	2009나86163	민사18부(나)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	2009-09-28
		2010-01-11	338	d	2009카합2139	민사합고 합의40부(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2009-12-28
		2010-01-19	346	d	2009나120414	민사11부(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9-12-28

박용수		최종근무법원	부산고등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8-02-13 ~ 2009-02-07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부산고등법원	2009-02-07	2009-02-19	12	a	2009노6	형사2부(나)	특경가법위반(조세)	2009-01-05
		2009-02-24	17	a	2009노128	형사3부(나)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	2009-02-17
		2009-02-26	19	a	2009노141	형사3부(다)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2009-02-19
		2009-03-04	25	a	2005나10623	민사6부(나)	손해배상(기)	2005-07-08
		2009-03-13	34	b	2009노223	형사3부(다)	특경가법위반(사기) 등	2009-03-12
		2009-04-17	69	b	2008누6059	행정2부(다)	육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 신청반려처분취소	2008-11-26
		2009-05-14	96	c	2009노347	형사3부(나)	상습사기 등	2009-05-13
		2009-05-19	101	c	2009노357	형사3부(다)	특경가법위반(횡령)	2009-05-15
		2009-05-28	110	c	2009노348	형사2부(나)	특경가법위반(사기)	2009-05-13
		2009-07-28	171	c	2009르370	가사1부(다)	이혼 등	2009-07-23
		2009-09-21	226	d	2009나11020	민사6부(다)	손해배상(기)	2009-07-30
		2009-09-23	228	d	2009나14166	민사7부(다)	손해배상(기)	2009-09-18
		2009-10-13	248	d	2009누5565	행정1부(나)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신청반려처분취소	2009-10-05
		2009-11-05	271	d	2009노781	형사1부(나)	특경가법위반(수재) 등	2009-10-21
		2009-11-06	272	d	2009나16735	민사2부(나)	근저당권말소	2009-10-29
		2009-11-20	286	d	2009노889	형사3부(나)	특경가법위반(배임) 등	2009-11-18
		2009-12-04	300	d	2009노914	형사1부(다)	특경가법위반(관세) 등	2009-12-02
		2009-12-07	303	d	2009나18311	민사5부(다)	손해배상(기)	2009-11-25

오세욱		최종근무법원	광주지방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8-02-13 ~ 2009-09-09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광주지방법원	2009-09-09	2009-09-25	16	a	2009고단2529	형사11단독	사기 등	2009-08-27
		2009-09-25	16	a	2009노2195	형사5부(나)	강제추행 등	2009-09-21
		2009-10-05	26	a	2009노2266	형사5부(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2009-09-29
		2009-10-09	30	a	2009카합1077	민사6부(나)	공사및입부방해 금지가처분	2009-10-08
		2009-10-16	37	b	2009노2403	형사5부(다)	방무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09-10-14
		2009-10-16	37	b	2009구합3828	행정부(다)	국가유공자비 해당결정처분취소	2009-10-16
		2009-10-19	40	b	2009노2348	형사5부(다)	무고	2009-10-08
		2009-10-20	41	b	2009노2412	형사5부(나)	상습도박방조	2009-10-15
		2009-10-29	50	b	2009노2446	형사5부(다)	업무상배임 등	2009-10-21
		2009-11-03	55	b	2009구합2771	행정부(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9-07-23
		2009-11-04	56	b	2009노2424	형사1부(나)	사기	2009-10-16
		2009-11-11	63	b	2009고단3316	형사13단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9-10-30
		2009-11-17	69	b	2009고단3478	형사13단독	업무상횡령 등	2009-11-12
		2009-11-26	78	b	2009노2686	형사5부(가)	문화재보호법위반	2009-11-16
		2009-11-27	79	b	2009고단2614	형사4단독	사기	2009-08-31
		2009-11-27	79	b	2009고단3400	형사7단독	업무상횡령 등	2009-11-05
		2009-12-03	85	b	2009고단3572	형사13단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9-11-20

	2009-12-07	89	b	2009구합4593	행정부(다)	임대조건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	2009-12-07
	2009-12-07	89	b	2009나12326	민사7부(나)	소유권이전등기	2009-12-09
	2009-12-08	90	b	2009노2494	형사3부(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009-10-28
	2009-12-08	90	b	2009고단3761	형사13단독	공갈 등	2009-11-30
	2009-12-09	91	c	2009노2807	형사1부(나)	모해위증 등	2009-12-01
	2009-12-15	97	c	2009고단3929	형사13단독	업무상배임 등	2009-12-11
	2009-12-18	100	c	2009고합460	형사4부(다)	공직선거법위반	2009-12-09
	2009-12-18	100	c	2009구합4807	행정부(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취소	2009-12-18
	2010-01-06	119	c	2009고합498	형사4부(나)	공직선거법위반	2009-12-31
	2010-01-14	127	c	2010노14	형사5부(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0-01-05
	2010-02-16	160	c	2009노2880	형사3부(다)	공기호위조 등	2009-12-08
	2010-03-08	180	c	2010고합74, 92,183	형사2부(다)	특수강도	2010-02-24
	2010-03-11	183	d	2010노444	형사1부(다)	업무상횡령 등	2010-02-22
	2010-03-17	189	d	2010고단727	형사2단독	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10-03-17
	2010-03-25	197	d	2010노558	형사1부(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 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009-12-09
	2010-04-19	222	d	2010고합142, 161	형사4부(다)	공직선거법위반 등	2010-04-16
	2010-04-20	223	d	2010고단985	형사10단독	배임수재	2010-03-31
	2010-05-03	236	d	2010고단1454	형사11단독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 등	2010-04-27
	2010-05-19	252	d	2010고단1796	형사3단독	장물취득	2010-05-19
	2010-06-16	280	d	2010고합229	형사4부(다)	특가법위반(뇌물) 등	2010-06-16
	2010-06-28	292	d	2010고단2122	형사12단독	무고	2010-06-11

이윤승		최종근무법원	서울가정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8-02-13 ~ 2009-02-07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서울가정법원	2009-02-07	2009-07-06	149	c	2009드합6677	가사3부(나)	이혼 및 위자료 등

송진현		최종근무법원	서울행정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8-02-13 ~ 2009-02-07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서울행정법원	2009-02-07	2009-06-26	139	c	2009구합24696	행정3부(다)	손실보상금증액
		2009-07-02	145	c	2009구합10789	행정3부(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임했을 수 있음.
- 주2) 이 표에서 '수임일'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일자로 봄. 단,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명이나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경우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사건과 관련해 기타 서류(예 : 준비서면, 참고서면, 열람및복사신청 등)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공판과 관련한 서류(예 : 변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 등)를 발송한 최초의 일자로 봄. 따라서 이 경우의 실제 수임일은 조사자료에 기재된 일자보다 앞설 수 있음.

〈표 18〉 2010년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의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사례

퇴직일~수임일(일)란의 'a'는 30일 이하, 'b'는 31~90일 'c'는 91~180일, 'd'는 181~365일을 의미함

이태운		최종근무법원	서울고등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9-02-09 ~ 2010-02-08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서울고등법원	2010-02-08	2010-03-15	35	b	2010노751	형사11부	특경가법(사기)	2010-03-11

황영목		최종근무법원	대구고등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9-02-09 ~ 2010-02-08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대구고등법원	2010-02-08	2010-02-25	17	a	2010노53	형사1부(나)	살인	2010-02-03
		2010-03-03	23	a	2009나10028	민사2부(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09-12-16
		2010-03-03	23	a	2009나10042	민사2부(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12-16
		2010-03-03	23	a	2009나10059	민사2부(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09-12-16
		2010-03-25	45	b	2010노94	형사1부(다)	살인미수	2010-02-24
		2010-03-31	51	b	2010나2511	1부(가)	유치권부존재확인	2010-03-18
		2010-04-28	79	b	2010나1280	민사3부(다)	임료(본소)	2010-02-17
		2010-04-28	79	b	2010나1297	민사3부(다)	소유권말소등기(반소)	2010-02-17
		2010-05-18	99	c	2009나6654	민사3부(다)	약정금	2009-08-31

이기중		최종근무법원	부산고등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9-02-09 ~ 2010-02-08	
수임사건법원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일~수임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부산고등법원	2010-02-08	2010-03-03	23	a	2010나1906	민사2부(나)	매매대금	2010-02-01
		2010-03-15	35	b	2009누7431	행정2부(다)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009-12-23
		2010-03-16	36	b	2009나17424	민사2부(나)	구상금	2009-11-11
		2010-03-18	38	b	2010노183	형사2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상해)	2010-03-02
		2010-03-24	44	b	2010노134	형사2부(다)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등	2010-02-16
		2010-04-23	74	b	2010노284	형사2부(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2010-04-22
		2010-04-28	79	b	2010나1135	민사2부(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2010-01-18
		2010-05-14	95	c	2010노19	형사2부(나)	특경가법(사기,배임) 등	2010-01-07
		2010-05-27	108	c	2010노385	형사2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등	2010-05-26
		2010-06-15	127	c	2010노398	형사2부(다)	공직선거법위반	2010-06-01

김관재		최종근무법원	광주고등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8-02-13 ~ 2010-02-08	
수입사건법원	퇴직일	수입일(추정)	퇴직일~수입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광주고등법원	2010-02-08	2010-03-02	22	a	2010누107	행정2부(다)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 불허처분 취소	2010-01-08
		2010-03-03	23	a	2009나5710	민사2부(다)	소유권말소등기	2009-10-08
		2010-03-12	32	b	2010노138	행정1부(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0-01-12
		2010-03-18	38	b	2010나1110	민사1부(다)	매매대금	2010-02-23
		2010-06-23	135	c	2010누565	행정2부(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10-03-03

이인재		최종근무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9-02-09 ~ 2010-02-08	
수입사건법원	퇴직일	수입일(추정)	퇴직일~수입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08	2010-04-26	77	b	2010고합372	형사24부(나)	특가법(조세) 등	2010-04-12
		2010-06-18	130	c	“2010고단2203, 2309”	형사11단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2010-04-29

김용균		최종근무법원	서울행정법원			최종근무법원 근무기간	2009-02-09 ~ 2010-02-08	
수입사건법원	퇴직일	수입일(추정)	퇴직일~수입일(일)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사건접수일
서울행정법원	2010-02-08	2010-03-18	38	b	2010구합13289	행정3부(나)	해임처분취소	2010-03-18
		2010-04-08	59	b	2010구합6526	행정7부(다)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2010-02-06

-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입했을 수 있음.
- 주2) 이 표에서 '수입일'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일자로 봄. 단,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명의로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경우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사건과 관련해 기타 서류(예 : 준비서면, 참고서면, 열람및복사신청 등)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공판과 관련한 서류(예 : 변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 등)를 발송한 초의 일자로 봄. 따라서 이 경우의 실제 수입일은 조사자료에 기재된 일자보다 앞설 수 있음.

〈표 19〉 퇴직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최종근무법원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사례
(퇴직일로부터 수임일까지 1년 이내의 사건, 변호사는 퇴직일/각 사건은 접수일이 빠른 순)

이호원		최종직책	서울가정법원장	최종근무기간	2006-08-24 ~ 2008-02-06	
수임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서울가정법원	2007-12-17	2008-02-06	2008-12-08	306	2007드합14384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박송하		최종직책	서울고등법원장	최종근무기간	2006-06-21 ~ 2008-02-13	
수임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7-11-07	2008-02-13	2008-03-28	44	2007나104739	출입금지 등
	2008-01-21		2008-03-27	43	2008노179	특경가법위반(배임) 등
오세빈		최종직책	서울고등법원장	최종근무기간	2008-02-13 ~ 2009-02-07	
수임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7-02-09	2009-02-07	2009-08-27	201	2007나17316	점용료
	2008-11-06		2009-04-23	75	2008나9909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8-11-17		2009-05-01	83	2008나102853	소유권이전등기
	2009-01-09		2009-08-20	194	2009누13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009-01-20		2009-04-13	65	2009나6549	소유권이전등기등
	2009-01-29		2009-09-23	228	2009나939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말소
박용수		최종직책	부산고등법원장	최종근무기간	2008-02-13 ~ 2009-02-07	
수임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부산고등법원	2005-07-08	2009-02-07	2009-03-04	25	2005나10623	손해배상(기)
	2008-11-26		2009-04-17	69	2008누6059	옥외광고물표시연장허가 신청반려처분취소
	2009-01-05		2009-02-19	12	2009노6	특경가법위반(조세)
고현철		최종직책	대법관	최종근무기간	2003-02-18 ~ 2009-02-17	
수임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대법원	2008-12-18	2009-02-17	2009-04-28	70	2008도11726	특가법위반(조세)
오세욱		최종직책	광주지방법원장	최종근무기간	2008-02-13 ~ 2009-09-09	
수임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광주지방법원	2009-08-27	2009-09-09	2009-09-25	16	2009고단2529	사기 등
	2009-08-31		2009-11-27	79	2009고단2614	사기
황영목		최종직책	대구고등법원장	최종근무기간	2009-02-09 ~ 2010-02-08	
수임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임일(추정)	퇴직-수임(일)	사건번호	사건명
대구고등법원	2009-08-31	2010-02-08	2010-05-18	99	2009나6654	약정금
	2009-12-16		2010-03-03	23	2009나100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12-16		2010-03-03	23	2009나100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09-12-16		2010-03-03	23	2009나100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2010-02-03		2010-02-25	17	2010노53	살인

이기중		최종직책	부산고등법원장	최종근무기간	2009-02-09 ~ 2010-02-08	
수입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입일(추정)	퇴직-수입(일)	사건번호	사건명
부산고등법원	2009-11-11	2010-02-08	2010-03-16	36	2009나17424	구상금
	2009-12-23		2010-03-15	35	2009누743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010-01-07		2010-05-14	95	2010노19	특경가법위반(사기,배임) 등
	2010-01-18		2010-04-28	79	2010나1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2010-02-01		2010-03-03	23	2010나1906	매매대금

김관재		최종직책	광주고등법원장	최종근무기간	2008-02-13 ~ 2010-02-08	
수입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입일(추정)	퇴직-수입(일)	사건번호	사건명
광주고등법원	2009-10-08	2010-02-08	2010-03-03	23	2009나5710	소유권말소등기
	2010-01-08		2010-03-02	22	2010누10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 불허처분 취소
	2010-01-12		2010-03-12	32	2010노1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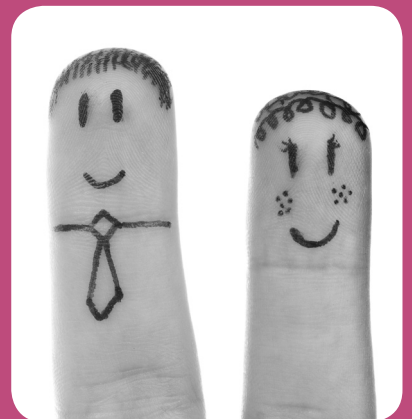
김용균		최종직책	서울행정법원장	최종근무기간	2009-02-09 ~ 2010-02-08	
수입사건법원	사건접수일	퇴직일	수입일(추정)	퇴직-수입(일)	사건번호	사건명
서울행정법원	2010-02-06	2010-02-08	2010-04-08	59	2010구합6526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주1) 이 표의 사례 건수는 공개된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 사례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을 수입했을 수 있음.

주2) 이 표에서 '수입일' 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일자로 봄.

단,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명이나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경우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사건과 관련해 기타 서류(예 : 준비서면, 참고서면, 열람및복사신청 등)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공판과 관련한 서류(예 : 변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 등)를 발송한 최초의 일자로 봄. 따라서 이 경우의 실제 수입일은 조사자료에 기재된 일자보다 앞설 수 있음.

시장 김밥아줌마,
삼거리 슈퍼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SSM출점중단과 지역상권살리기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보다 약자의 편에 서서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주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아직 회원가입이 망설여지신다면

후원전화 060-800-5300 (한통화 2천원)

참여연대

(사법감시)誌 1995~2010
제01호 우조고성희롱사건 항소심 판결

제02호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제03호 12.12, 5.18과 사법바로세우기

제0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제0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제06호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제07호 대법관 인준청문회

제08호 지상중계, 사회복지, 검찰 1년의 평가

제09호 참여연대, 콜리엇 삼성의 위험성

제10호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제11호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험성

제12호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인권

제13호 검찰에게만 족쇄를 걸어야 한다

제14호 무죄의견은 폐지되어야 한다

제15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제16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제17호 사법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한다.

제18호 경제사범 재판결과 분석

제19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제20호 불법정치가 자금 재관결과 분석

제21호 2004년 주요 판결, 다담들과 걸림돌

제22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취임 특집

제23호 [신입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재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제24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제25호 [신입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재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제26호 [신입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재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제27호 [신입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재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제28호 [신입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재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제29호 [신입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재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